강의계획안

성명	신 명 철	소속	세연교육연구소

교육주제	소음측정과 반려동물(6강)
교육대상/인원	층간소음 상담가 양성과정 / 000명
교육장소	온라인 동영상
교육목표	- 층간소음 측정의 절차를 이해하고, 이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음측정 결과의 유·불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소음발생과 대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발 및 실행	진행순서	교수매체	교수방법	시간배분
① 도입 . 주의집중, 동기부여 학습목표, 선수지식 등	■ 강사소개 ■ 학습목표 소개 ■ 강의목차(진행순서) 소개	ppt	강의식	2 분
② 전개 . 주요내용	1. 층간소음 측정 제도의 이해 - 소음측정의 법적근거 - 공동주택의 범위 - 층간소음의 범위 - 층간소음의 기준 (소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2. 층간소음 측정의 절차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민원의 절차(관리주체의 유무에따라) - 소음측정 방법 -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3.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당사자의 이해 - 결과가 유의미 할 때 신청인의 입장 - 결과가 무의미 할 때 신청인의 입장 4. 반려동물과 층간소음 - 반려동물 소음과 해결 노력 - 반려동물 소음의 조치	ppt 동영상	강의식	45 분
③ 심화(발전) . 실습&피드백		ppt	강의식	분
④ 정리 . 학습자질문, 강사응답, 마무리&연결	소음측정이 결코 층간소음 해결의 길이 아님을 상기한다.	ppt	강의식	3 분

제6강 소음측정과 반려동물

강사 신 명 철

차 례

1. 층간소음 측정제도의 이해

- 소음측정의 법적근거 - 공동주택의 범위
- 층간소음의 범위 - 층간소음의 기준

2. 층간소음 측정 절차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 민원의 절차(관리주체의 유무)
- 소음측정 방법 -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3.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당사자의 이해

- 결과가 유의미 할 때 신청인의 입장 - 결과가 무의미 할 때 신청인의 입장

4. 반려동물 소음 발생

- 반려동물 소음과 해결 노력 - 반려동물 소음의 조치

소음측정의 법적근거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 ·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0. "소음측정"이란 전문기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및 공기전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의 범위

□ 공동주택 : **층간소음**은 다음과 같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

■ 공동주택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예)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

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

층간소음의 범위

제도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인정 및 예외 사례

층간소음 상담 등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대상과 예외 사례가 있는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 : 층간소음 상담 세부 범위(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층간소음 대상 포함	층간소음 대상 제외
- 걷거나 뛰는 소리(아이, 성인) - 문 여닫는 소리 - 물건 등 낙하 및 끄는 소리 - 망치 소리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 (마찰·충격·타격음 제외) - 담배·음식 냄새 - 원인불명 소음 등

경범죄의 종류

□ 경범죄(인근 소란 등)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1. (인근 소란 등)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 **39**	38 → **34**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층간소음 기준 / 출처: 환경부

층간소음의 기준 설명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소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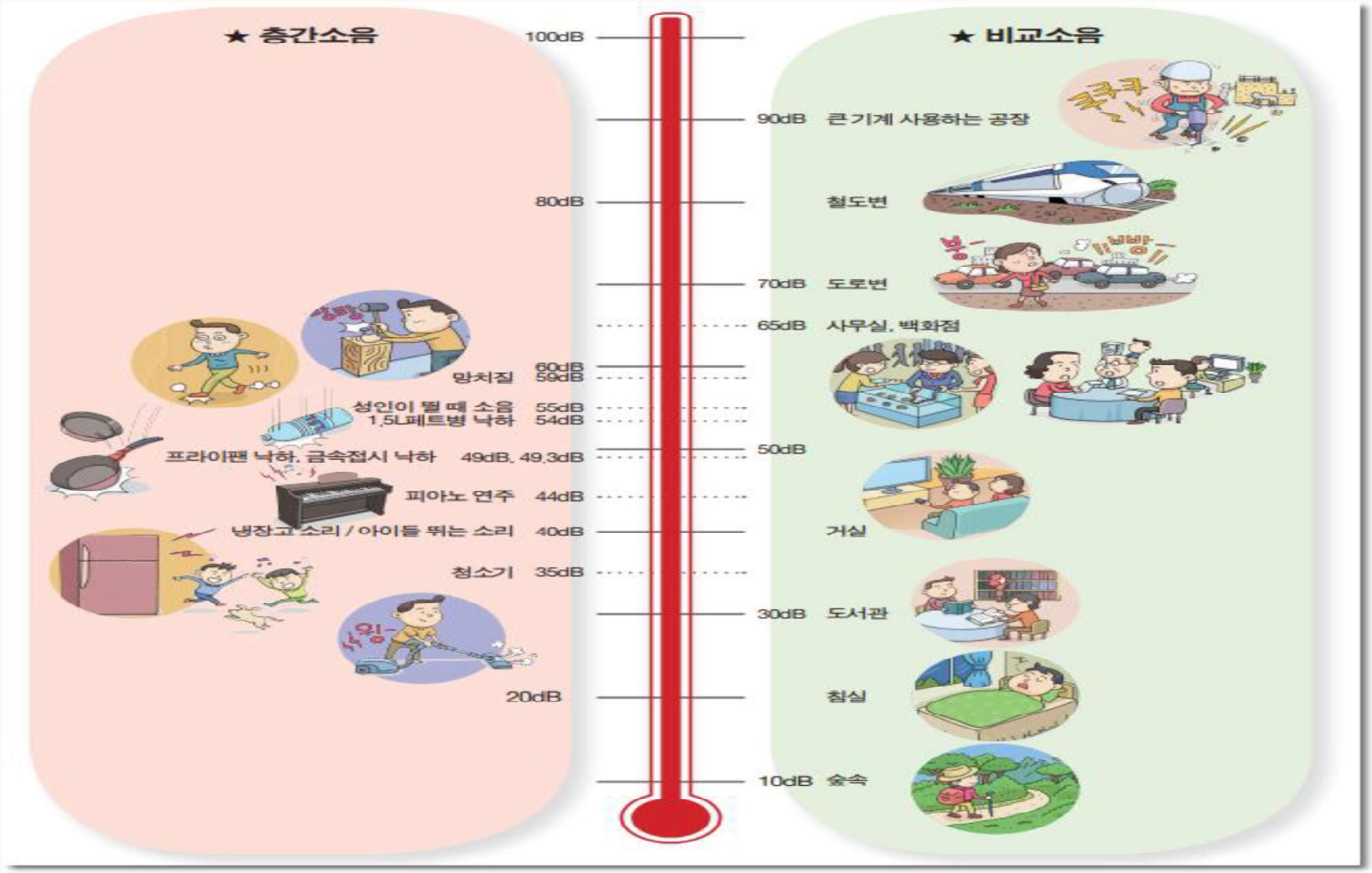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목적 및 필요성

목적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 예방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층간소음 주민자율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층간소음 분쟁의 1차적 분쟁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필요성

환경부 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등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함.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 됨.

관리(주체)위원회의 노력(공동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의 중재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관리소나 위원회에 직접 방문 접수가 원칙이나 필요시 전화 또는 이메일 상담이 가능 (방문이 어렵거나 연로하신 주민)
관리위원회 소집/회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실시
통지서 전달 – 피민원인	피민원인 집에 통지서가 미리 전달됨으로써 현장방문에 대한 거부감을 낮춘다. (방문일정 표기 – 예; 7월 14일)
민원인/피민원인 중재	민원인과 피민원인 집에 방문하여 세대 간 진술, 생활패턴 소음원 등을 파악하고 중재안을 제시한다.
중재기간	세대 간 중재안을 제시한 후 중재기간(1~2개월)동안 관리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소통하고 개선여부를 파악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의 접수

입주자: 온라인 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

- ※필수 첨부파일

①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규정, 별지 제1호서식)
②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규정, 붙임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④ 동의서(붙임 서식)

방문상담

상담

방문상담은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것으로 관리소의 유무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상담을 신청한다.

상담대상은 신청세대와 상대세대 모두 해당되지만 상대세대의 경우 상담에 동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가 있는 경우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신청 요청을 한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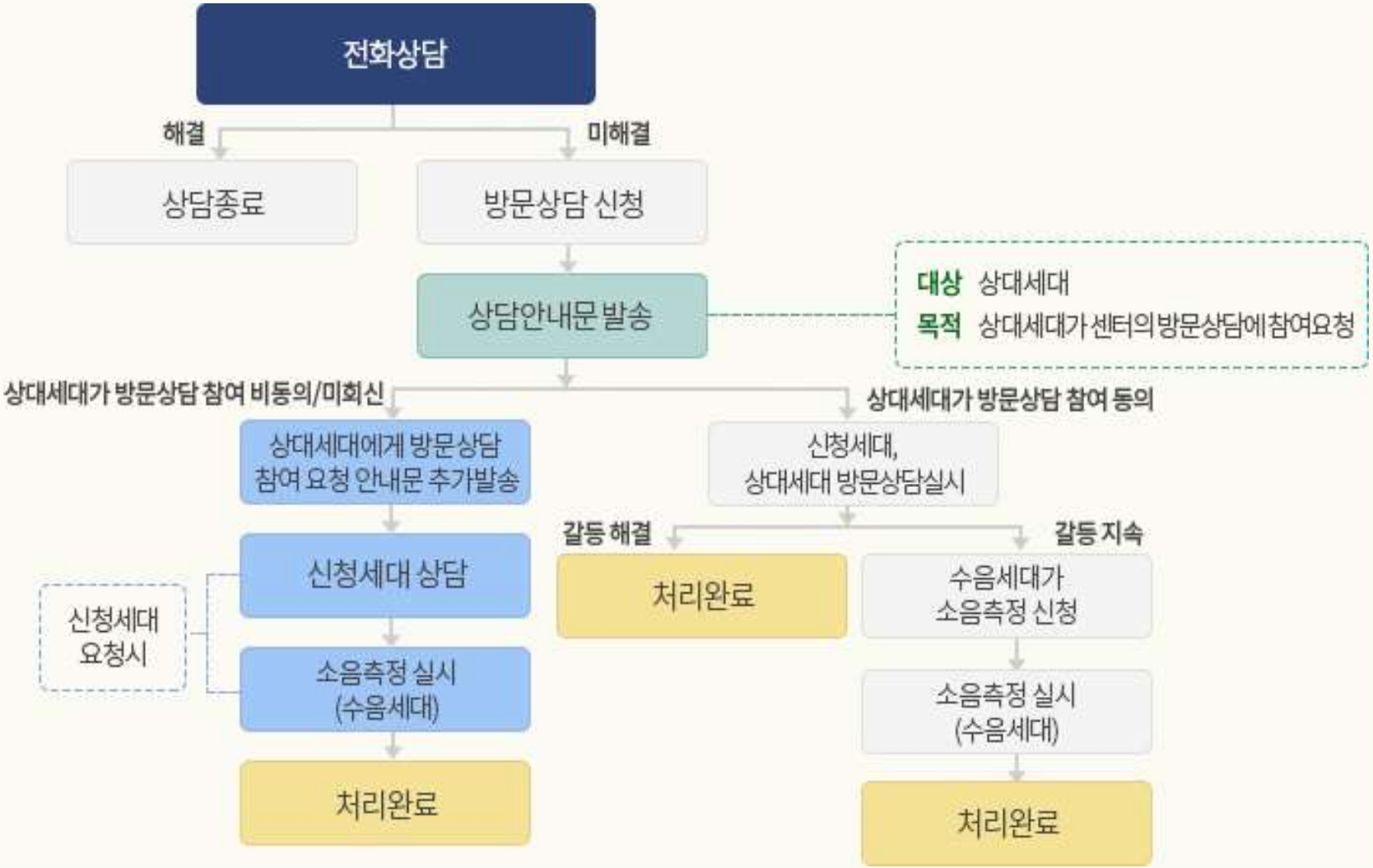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신청 확인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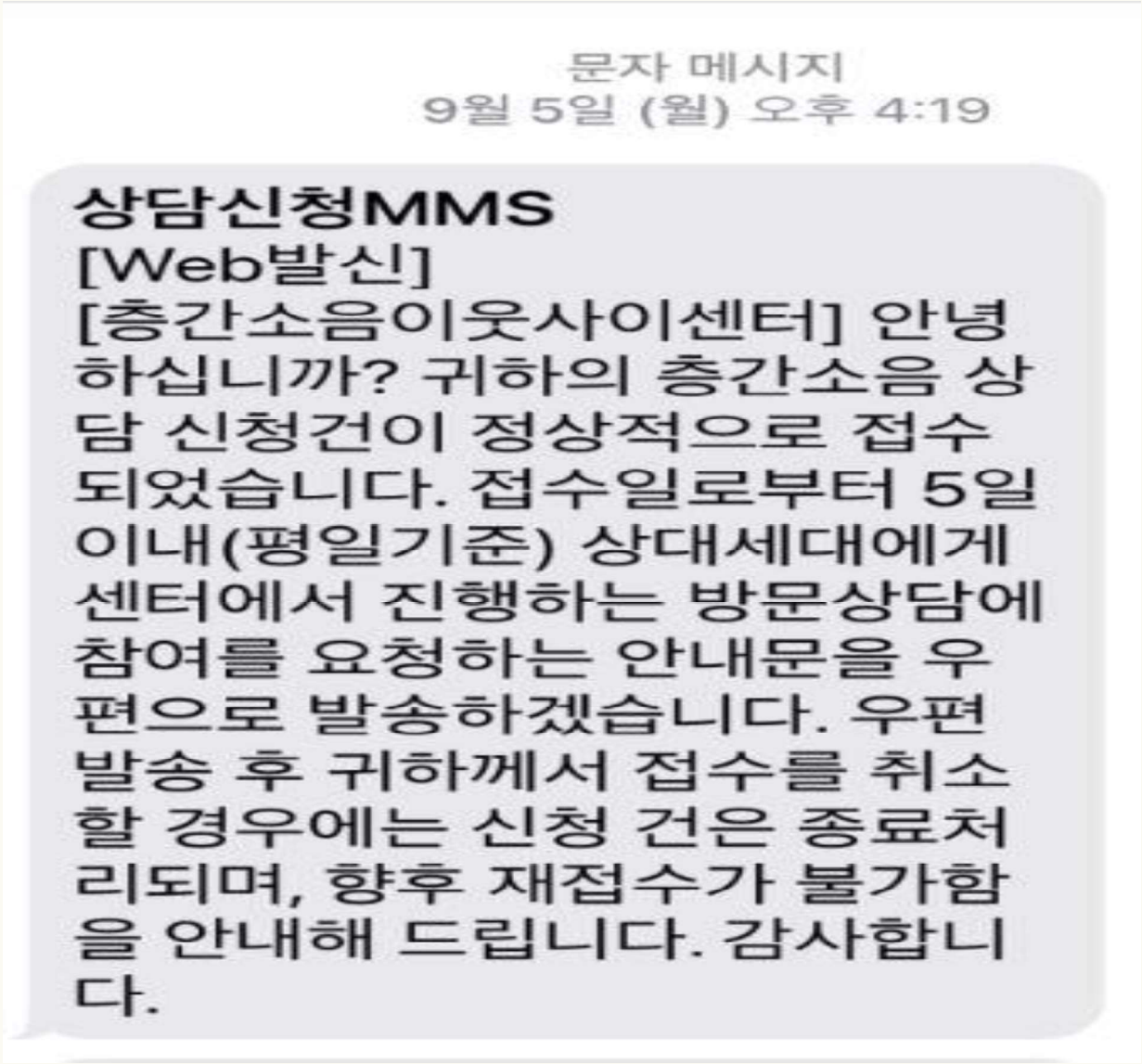

소음측정

제7조(소음측정)

①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를 받은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신청세대가 소음측정 3일전까지 소음측정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신청세대에게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받고** 측정세대 내 · 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
다만,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④ 전문기관은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 신청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소음측정 방법

제8조(소음측정방법)

① 소음측정은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녹음을 실시하고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할 때 이를 활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측정결과를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출입일지에 기록된 세대원 출입 시간대
2. 층간소음과 관계없이 측정세대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 시간대
3. **소음측정 시간을 초과하여 측정한 시간대**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 ·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6.] [환경부고시 제2020-176호, 2020. 8. 10., 제정.]

소음측정이 불가한 경우

제7조(소음측정)

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
2.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 · 문자 등의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는 경우**
3. 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
4. 협의된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 · 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8. 26.]

중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후기] 이웃사이센터 신고후기

ㅇㅇ(14.44) | 2018-10-03 17:37:34

지금도 윗집에서 쿵쿵대고있어서 제정신아니니 글 정신없는건 양해부탁함

응 하나도 도움안되
민원요구한날부터 민원밀렸다고 두달뒤에 겨우 방문하더니
한시간동안 종이에 꾸역꾸역 뭐 적고 얘기듣고하더니
아네~ 위층 이제 발매트까시고 집안에서 슬리퍼 착용해주시구요~
아래층 이제 보복성으로 천장 두들기는거 멈춰주세여~
이제 사이좋은 이웃이 되어보아요 오홍홍하고 가더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뭔가 길었는데 상담 저게다임
윗집 네네 저희가 다알겟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 ㅈㄹ하더만
일주일지나니 롤백됨 괘심했는지 오히려 더뜀

내가 참다못해서 다시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되냐고 다시뛴다고하니까
만 하루동안 우리집을 비운다음 소음측정을 의뢰할수있데^^
근데 주말에 심하게뛰는데 주말엔 측정안됨ㅎ
이웃사이센터 방문요청접수하고 2달동안 참아가면서 기다린 내 인내심 ㅇㄷ?

그래서 걍 빡쳐서 다이소가서 고무망치 두개사옴
둔기전사로 전직함 ㅅㄱ링
윗집애미년이 가정교육해야될시간에 보지팔러나가서 가정교육빵꾸난건데
왜 내가 고통스러워야됨? 걍 삘올때다 존나치는중
망치질할때마다 윗집에서 누구야? 이 ㅈㄹ병하면서 경찰부른다 빽빽소리지르는데 내가 알바아님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① 무조건 쫓아 올라가기

② 훈계와 협박

③ 어설픈 중재

④ 보복 소음

⑤ 소음원 파악 전 경찰 신고

⑥ 여론전

⑦ 인격 모독

⑧ 고의적 역보복

⑨ 물리적 폭력

소음측정 결과에 따른 신청인의 입장

결과가 유의미할 때 신청인의 입장

- 신청인이 예민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소음측정 결과 만으로는 소음 문제가 종결 되지는 않는다.

결과가 무의미 할 때 신청인의 입장

- 신청인이 예민하다는 주변의 시선이 설득력을 얻는다.(사실과 관계 없이)
- 상대세대가 사실상 소음을 유발해 왔더라도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어려워진다.
- 소음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반려동물 소음과 해결 노력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국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 1500만명 (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정도.

반려동물의 소음은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이며,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 정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10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22. 3.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 · 관리 ·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 · 진동관리법안 발의

반려동물 소음의 조치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에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
외출 시 – 가능한 현관에서 먼 쪽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권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뛸 때

주로 소음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매트 설치 권고.

되새김

결국 층간소음의 저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먼저 입니다.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노력이 나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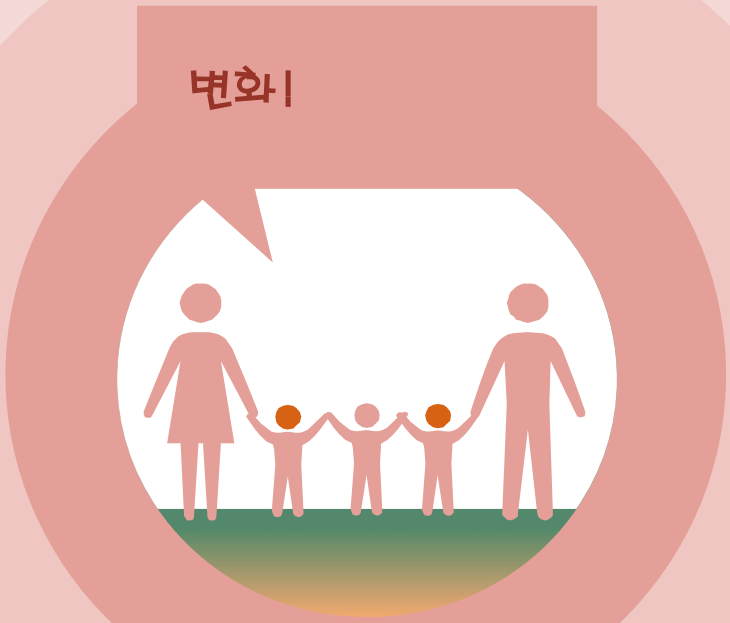

변화는 지금 바로
우리의 작은 의지에서 시작됩니다